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12 호】

2014년 09월 30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훈 령

고양시 훈령 제307호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	---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1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3호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46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4호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5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6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8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70
고양시 고시 제2014-282호	도로명주소 고시	71
고양시 고시 제2014-283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75
고양시 고시 제2014-28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77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 양 시 시 보

제 1112호

고양시 고시
제2014-285호

중로3-180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79

고양시 고시
제2014-286호

도시계획시설(경기도 고양소방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2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30일

고양시 훈령 제307호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심사내용)”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기간 및 시기의 변경)”을 “(허가의 변경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 원 미만인 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항공운임 지급)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며 국외여행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감사) 감사부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거나 정기 감사 등에 포함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된다

제18조제4항 중 “지식관리시스템의 “해외연수보고서”란“을 “표준지식관리시스템과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마이스산업육성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 석 진
	팀 장 성 명	국제협력팀장 이 홍 섭
	담 당 자 성명 · 전화	박 주 원 (8075-3526)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7조 관련)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 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 여행은 금지
 - ※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예시) : 감독 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자회사,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지도·단속 및 감리대상 업체, 공무 수탁기관 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항공운임과 숙박비로 한다
- 시가 민간인에 대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의 적정 준용 여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무국외여행심사) 창조성장개발국장은 <u>제11조</u>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여행의 필요성 적절성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p> <p><신 설></p>	<p>제6조(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제한) ① 창조성장개발국장은 <u>제11조</u>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여행의 필요성 적절성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p> <p>②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7조(심사내용)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행목적 및 필요성</u> 2. <u>여행목적지의 적합성</u> 3. <u>여행지의 적격성</u> 4. <u>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u> 5. <u>여행경비의 명확성</u> 6. <u>초청경위 및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u> 	<p>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p> <p>1. ~ 6. <삭 제></p>
<p>제9조(여행기간 및 시기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추진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심사 · 허가한다</p> <p><신 설></p>	<p>제9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추진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심사 · 허가한다</p> <p>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9조의2(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 원 미만인 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9조의3(항공운임 지급)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며 국외여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9조의4(감사) 감사부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거나 정기감사 등에 포함하여 감사할 수 있다</p>
<p>제16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16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된다</p>
<p>제18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 ③ (생략) ④ 공무국외여행자는 보고서를 고양시 지식관리시스템의 “해외연수보고서”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표준지식관리시스템과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p>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적 재난·재해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항공운임(항공료)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 규정 마련
-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정기 감사 명문화
-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서 제척하고자 함
- 국외출장 후 보고서 등록을 정보유통망에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 가. 국가 재난사항 발생 시 공무국외여행 제한 규정(안 제6조제2항)
-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 금지 마련(안 제7조 [별표])
- 다.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공무국외여행 허가 취소(안 제9조제2항)
- 라.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대행사 선정 의무화(안 제9조의2)
- 마.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 국외여행자 본인에게 지급 금지 조항 마련(안 제9조의3)
- 바.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명문화(안 제9조의4)
- 사.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 그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안 제16조제4항)
- 아.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고양시 표준지식관리시스템과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보고서 등록 의무화(안 제18조제4항)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공동부담 조건(고양시6, 입주민4)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하여 적용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관련 별표 8이 2014.01.14.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르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위반행위 기준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 징수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4항)

-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신설 (안 제18조제2항, 별표 1의2)
-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 기준으로 개정함 (안 제21조, 별표 4)
- 라.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 함 (별표 6)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0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청소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청소과 청소행정팀 (031-8075-268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이상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를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고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1의2와 같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청 소 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청 소 과 장 이 완 범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이 용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재 영 (031-8075-2682)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 반용봉투, 음 식물 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별표 1의2]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 반용봉투, 음 식물 용 봉투	2ℓ	90	66		16	8
	5ℓ	170	123		32	15
	10ℓ	330	267		33	30
	20ℓ	630	526		47	57
	50ℓ	1,590	1,361		76	153
	100ℓ	3,150	2,706		142	302

[별표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집하시설의 관리·운영)</p> <p>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1조(집하시설의 관리·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이상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p>
<p>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p> <p>① (생략)</p> <p>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u>별표 1과 같다.</u>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p>	<p>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판매가격은 <u>별표 1과 같고,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의2와 같다.</u></p>
<p>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제6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 4</u>"와 같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p>	<p>제21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u>별표 8</u>에 따른다.</p>

현 행

[별표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 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 비	제작 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 봉투,음 식물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 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개 정 안

[별표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 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 비	제작 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 봉투,음 식물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 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별표1의2]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 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 비	제작 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2ℓ	90	66		16	8
	5ℓ	170	123		32	15
	10ℓ	330	267		33	30
	20ℓ	630	526		47	57
	50ℓ	1,590	1,361		76	153
	100ℓ	3,150	2,706		142	302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사양(제17조 제4항 관련)</p> <div data-bbox="217 533 750 1039">  <p>쓰레기봉투</p> <p>장액(DIC:137)</p> <p>녹색(DIC:92)</p> </div>	<p>[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사양(제17조 제4항 관련)</p> <div data-bbox="857 528 1390 1034">  <p>종량제봉투</p> <p>장액(DIC:137)</p> <p>녹색(DIC:92)</p> </div>

현행					개정안	
[별표4]					[별표4]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삭 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	20	3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현행		개정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자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 제3항)	30	70	100
	3. 이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 2항)	10	20	30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6]</p> <p>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p> <table><tr><th>신고내용</th><th>과태료 부과액</th><th>신고 포상금</th></tr><tr><td>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td><td>3만원</td><td>1만원</td></tr><tr><td>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td><td>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td><td>4만원</td></tr><tr><td>3.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td><td>10만원</td><td>2만원</td></tr><tr><td>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td><td>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td><td>4만원</td></tr><tr><td>5.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td><td>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td><td>10만원</td></tr><tr><td>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td><td>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td><td>20만원</td></tr></table>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액	신고 포상금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만원	1만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3.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2만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만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p>[별표6]</p> <p>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p> <table><tr><th>위반행위</th><th>포상금액</th></tr><tr><td>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td><td></td></tr><tr><td>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td></tr><tr><td>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1만원</td></tr><tr><td>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4만원</td></tr><tr><td>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td><td>4만원</td></tr><tr><td>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10만원</td></tr><tr><td>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20만원</td></tr><tr><td>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td><td></td></tr><tr><td>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td><td>20만원</td></tr><tr><td>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td><td>14만원</td></tr><tr><td>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td><td></td></tr><tr><td>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td><td>20만원</td></tr><tr><td>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td><td>10만원</td></tr><tr><td>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10만원</td></tr><tr><td>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td><td>20만원</td></tr></table>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액	신고 포상금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만원	1만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3.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2만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만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이용시간 연장, 대출권수 확대)과 올해 개관한 도서관의 운영방향(휴관일)을 마련하여 지역의 정보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함.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 8. 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 순화

3. 주요골자

- 가. 시민에게 건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함 (안 제4조)
- 나. 새로이 개관한 도서관(신원도서관) 휴관일을 기존 도서관의 위치와 운영일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7조)
- 다. 시민들의 책읽는 분위기 확산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1회 대출권수를 확대함(안 제12조제2항)

- 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도서대출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함(안 별지 제2호서식)
- 마.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 및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이 되게 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0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화정동 873)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31-8075-90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실

하절기(3월~10월) 07:00 ~ 23:00

동절기(11월~2월) 08:00 ~ 23:00

2. 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연속간행물실 09:00 ~ 18:00

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

평일(월~금) 09:00 ~ 22:00

주말(토~일) 09:00 ~ 18:00

제5조의 제목 “(도서관의 이용)”을 “(열람실의 이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좌석표를 교부받아 선착순으로”를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 마두·한피·화정·식사·신원도서관, 주엽
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의혹"을 "의심"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풍기질서"를 "질서"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 도서관내의"를 "그 밖에 도서관내"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식"을 "취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도서관내의"를 "그 밖에 도서관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퇴장"을 "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초등학생 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 어린이자료실에서"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권"을 "7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다만, 대출당일 연장은 불가능하다.)"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변상의무자는 변상결정일로부터14일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각호 외의 부분중 "의한"을 "따른"으로, "7인"을 "9명"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덕양구지역분과위원회 : 덕양구도서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
2. 일산동구지역분과위원회 :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
3. 일산서구지역분과위원회 : 일산서구도서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

별표 1,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석 재 복
	팀 성 장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은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정 훈 (8075-9014)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위 치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한빛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9-9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별지 제1호서식]

(알면)

(사진)

도 서 대 출 증

성 명 :

(시마크)

대출ID :

바코드 입력부분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직인)

※ 서식사양

- 크기 : 가로 (8cm) x 세로 (5cm)
- 성명과 대출ID사이 중간에 흰색 시마크 삽입
- 사진 : 증명사진[가로 (2.5cm) x 세로 (3.0cm)]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의 직인 : 인영인쇄

(뒷면)

유 의 사 항

1. 도서대출증은 대출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증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나 대여가 불가합니다.
3. 대출자료수 및 기간 : 1회 7권 14일 이내입니다.(연체시 대출정지)
※ 대출정지기간 : 연체일수 × 연체자료수
4. 대출시간 : 09:00 ~ 18:00(종합자료실:월~금 09:00 ~ 22:00)
5.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시 변상의무가 있습니다.
6. 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 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 아람누리·백석·대화·풍동·행신·원당·덕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 마두·한외·화정·식사·신원도서관,
주엽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
7. 거주지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031) 0000-0000	마두:031) 0000-0000	백석:031) 0000-0000
한외:031) 0000-0000	대화:031) 0000-0000	풍동:031) 0000-0000
화정:031) 0000-0000	행신:031) 0000-0000	원당:031) 0000-0000
식사:031) 0000-0000	덕이:031) 0000-0000	신원:031) 0000-0000
주엽어린이:031) 0000-0000	화정어린이:031) 0000-0000	행신어린이:031) 0000-0000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www.goyanglib.or.kr

[별지 제2호서식]

도서대출증발급(재발급)신청서

본 인	성 명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미취학아동 등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작성)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					
소 속 (학교, 직장 등)					
아이디		비밀번호			
* 영문, 숫자 조합 6~20자 (첫자는 영문만 가능)		* 영문, 숫자 조합 8~20자			
※ 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본 인)	휴대전화				
	자택전화				
	소속전화				
	E-MAIL				
제 2 연락처	성 명		관 계		
	연 락 처				
<p>본인은 고양시립도서관의 도서대출증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도서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보호자가 연대하여 변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청자(본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보 호 자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p>					
<p>※ 신청자격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양시 재직자(고양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재학생(고양시 소재 학교)으로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8조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p> <p>※ 확인서류 : 본인 여부 및 고양시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및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p> <p>※ 증명사진 미지참시 도서관에서 촬영 가능.</p>					

기증신청서

1. 기증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	종 류	권(건)수	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 서식사양

- 크기 : 가로 (210mm) x 세로 (295 mm)
- 바탕색 : 흰색
-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

위탁신청서

1. 위탁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2. 위탁신청목록개요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 서식사양

- 크기 : 가로 (210mm) x 세로 (295 mm)
- 바탕색 : 흰색
-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이용시간) (생략)</p> <p>1. <u>열람실 08 : 00 ~ 22 : 00</u></p> <p>2. <u>자료실 09 : 00 ~ 18 : 00</u></p>	<p>제4조(이용시간) (현행과 같음)</p> <p>1. <u>열람실</u></p> <p style="padding-left: 20px;"><u>하절기(3월~10월) 07:00 ~ 23:00</u></p> <p style="padding-left: 20px;"><u>동절기(11월~2월) 08:00 ~ 23:00</u></p> <p>2. <u>자료실</u></p> <p style="padding-left: 20px;"><u>어린이자료실·연속간행물실 09:00 ~ 18:00</u></p> <p style="padding-left: 20px;"><u>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u></p> <p style="padding-left: 20px;"><u>평일(월~금) 09:00 ~ 22:00</u></p> <p style="padding-left: 20px;"><u>주말(토~일) 09:00 ~ 18:00</u></p>
<p>제5조(도서관의 이용)</p> <p>① 열람실의 이용은 <u>좌석표를 교부받아 선착순으로</u> 입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할 수 있다.</p> <p>② 이용자는 <u>교부받은 좌석표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5조(열람실의 이용)</p> <p>① ----- <u>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u> -----</p> <p>----- .</p> <p>② (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정기휴관)</p> <p>1~2 (생략)</p> <p>3. <u>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 마두·한뫼·화정·식사도서관 주엽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u></p>	<p>제7조(정기휴관)</p> <p>1~2 (현행과 같음)</p> <p>3. <u>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 마두·한뫼·화정·식사·신원도서관 주엽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u></p>
<p>제8조(임시휴관) 소장은 도서관의 장서 점검, 도서정리, 시설의 정리 및 수리 <u>기타</u>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사유를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u> 기타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8조(임시휴관) -----</p> <p>-----</p> <p><u>그 밖에</u>-----</p> <p>-----</p> <p>-----<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u>-----</p> <p>----- .</p>

현행	개정안
<p>제9조(입관거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u>의혹</u>이 되는 물품류를 소지한 자 (생략) 도서관내의 <u>풍기질서</u>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u>기타</u> 도서관내의 질서 유지상 입관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p>제9조(입관거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 <u>의심</u> ----- (현행과 같음) ----- <u>질서</u> ----- <u>그 밖에</u> 도서관내 -----
<p>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음주, 잡담, <u>기타</u>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각종 음식물 <u>시식</u> 행위 5~8. (생략) 9. <u>기타</u> 도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p>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 <u>그 밖에</u> ----- ----- ----- -- <u>취식</u> --- 5~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도서관내 -----
<p>제11조(이용의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장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u>퇴장</u>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p>제11조(이용의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 <u>퇴관</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2조(관외대출)</p> <p>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소장이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증 또는 소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도서대출증 기능이 포함된 카드 등을 소지한 자로 본인에 한한다. <u>초등학생 이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 어린이자료실에서 대리대출을 할 수 있으며 대리대출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u></p> <p>②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당일 연장은 불가능하다.)</p> <p>⑥ (생략)</p> <p>제14조(관외대출정지)</p> <p>①~② (생략)</p> <p>③ <u>기타</u> 소장이 관외대출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p> <p>제18조(도서대출 권리상실)</p> <p>1.~3. (생략)</p> <p>4. <u>기타</u> 소장이 도서대출의 권리를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p> <p>제21조(변상결정)</p> <p>① (생략)</p> <p>② <u>변상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변상의무자의</u></p>	<p>제12조(관외대출)</p> <p>① ----- ----- ----- -----<u>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u> ----- -----</p> <p>② ----- -- 7권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삭제)</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관외대출정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u> ----- ----- -----.</p> <p>제18조(도서대출 권리상실)</p> <p>1.~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21조(변상결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변상의무자는 변상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u> -----</p>

현행	개정안
<p>기간연장의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제23조(관외대출 제한자료)</p> <p>1.~5. (생략)</p> <p>6. <u>기타</u> 제한이 필요하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자료</p> <p>제24조(분과위원회 구성) 조례제14조제5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각각 <u>7인</u>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u>당해</u>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p> <p>1. <u>덕양지역분과위원회</u> : <u>운영과장, 고양시의회 의원 1인</u>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p> <p>2. <u>일산지역분과위원회</u> : <u>시설관리과장, 고양시의회 의원 1인</u>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p> <p>3. <신설></p>	<p>----- -----.</p> <p>제23조(관외대출 제한자료)</p> <p>1.~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제24조(분과위원회 구성) ----- 따른 ----- ----- ----- <u>9명</u> ----- ----- <u>해당</u> ----- ----- .</p> <p>1. <u>덕양구지역분과위원회</u> : <u>덕양구도서관과장</u> ----- ----- ----- -----</p> <p>2. <u>일산동구지역분과위원회</u> : <u>일산동구도서관과장</u>----- ----- -----</p> <p>3. <u>일산서구지역분과위원회</u> : <u>일산서구도서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u></p>

현행	개정안																																																																
<p>[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p>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아람누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마두동 817)</u></td></tr> <tr> <td>마두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마두동 1112)</u></td></tr> <tr> <td>백석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백석동 1231)</u></td></tr> <tr> <td>한빛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일산동 1558)</u></td></tr> <tr> <td>대화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대화동 2103)</u></td></tr> <tr> <td>풍동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풍동 1257)</u></td></tr> <tr> <td>화정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 77번길 8(화정동 873)</u></td></tr> <tr> <td>행신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 33번길 25-6(행신동 634-87)</u></td></tr> <tr> <td>원당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 790번길 49-9(성사동 369-7)</u></td></tr> <tr> <td>식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 2로 43-6(식사동 1562)</u></td></tr> <tr> <td>덕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덕이동 1533)</u></td></tr> <tr> <td></td><td><u><신설></u></td></tr> <tr> <td>주엽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주엽동 122)</u></td></tr> <tr> <td>행신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 181번길 42(행신동 804)</u></td></tr> <tr> <td>화정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화정동 945)</u></td></tr> </table>	명칭	위치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마두동 817)</u>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마두동 1112)</u>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백석동 1231)</u>	한빛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일산동 1558)</u>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대화동 2103)</u>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풍동 1257)</u>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 77번길 8(화정동 873)</u>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 33번길 25-6(행신동 634-87)</u>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 790번길 49-9(성사동 369-7)</u>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 2로 43-6(식사동 1562)</u>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덕이동 1533)</u>		<u><신설></u>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주엽동 122)</u>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 181번길 42(행신동 804)</u>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화정동 945)</u>	<p>[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p> <table> <tr> <th>명칭</th><th>위치</th></tr> <tr> <td>아람누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u></td></tr> <tr> <td>마두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u></td></tr> <tr> <td>백석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u></td></tr> <tr> <td>한빛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u></td></tr> <tr> <td>대화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u></td></tr> <tr> <td>풍동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u></td></tr> <tr> <td>화정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77번길 8</u></td></tr> <tr> <td>행신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33번길 25-6</u></td></tr> <tr> <td>원당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790번길 49-9</u></td></tr> <tr> <td>식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2로 43-6</u></td></tr> <tr> <td>덕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u></td></tr> <tr> <td>신원도서관</td><td><u>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u></td></tr> <tr> <td>주엽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u></td></tr> <tr> <td>행신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181번길 42</u></td></tr> <tr> <td>화정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u></td></tr> </table>	명칭	위치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u>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u>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u>	한빛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u>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u>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u>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77번길 8</u>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33번길 25-6</u>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790번길 49-9</u>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2로 43-6</u>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u>	신원도서관	<u>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u>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u>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181번길 42</u>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u>
명칭	위치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마두동 817)</u>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마두동 1112)</u>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백석동 1231)</u>																																																																
한빛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일산동 1558)</u>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대화동 2103)</u>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풍동 1257)</u>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 77번길 8(화정동 873)</u>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 33번길 25-6(행신동 634-87)</u>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 790번길 49-9(성사동 369-7)</u>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 2로 43-6(식사동 1562)</u>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덕이동 1533)</u>																																																																
	<u><신설></u>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주엽동 122)</u>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 181번길 42(행신동 804)</u>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화정동 945)</u>																																																																
명칭	위치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중앙로 1286</u>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355</u>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일산로 118</u>																																																																
한빛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탄중로 284</u>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일산로 689</u>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숲속마을로 108</u>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은빛로77번길 8</u>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행당로33번길 25-6</u>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호국로790번길 49-9</u>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u>위시티2로 43-6</u>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하이파크로 128</u>																																																																
신원도서관	<u>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u>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u>주엽로 104</u>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소원로181번길 42</u>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u>화신로 323</u>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 (앞면) (생략) (뒷면)</p> <div data-bbox="172 477 785 1827">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대출증은 대출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증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나 대여가 불가합니다. 3. 대출자료수 및 기간 : 1회 5권 14일 이내입니다.(연체시 대출정지) ※ 대출정지기간 : 연체일수 × 연체자료수 4. <u>대출시간 : 09:00 ~ 18:00</u> 5.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시 변상의무가 있습니다. 6.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 정기휴관일 아람누리·백석·원당·행신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마두·화정도서관, 주엽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7. 거주지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아람누리:031) 000-0000 마두:031) 000-0000</u> <u>백석:031) 000-0000</u> <u>화정:031) 000-0000 원당:031) 000-0000</u> <u>행신:031) 000-0000</u> <u>주엽어린이:031) 000-0000</u> <u>화정어린이:031) 000-0000</u> <u>행신어린이:031) 000-0000</u> <p style="text-align: center;">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www.goyanglib.or.kr</p> </div>	<p>[별지 제1호서식] (앞면) (현행과 같음) (뒷면)</p> <div data-bbox="813 477 1433 1865">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대출증은 대출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증은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나 대여가 불가합니다. 3. 대출자료수 및 기간 : 1회 7권 14일 이내입니다.(연체시 대출정지) ※ 대출정지기간 : 연체일수 × 연체자료수 4. <u>대출시간 : 09:00 ~ 18:00</u> <u>(종합자료실:월 ~ 금 09:00 ~ 22:00)</u> 5. 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시 변상의무가 있습니다. 6. 휴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 정기휴관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 아람누리·백석·대화·풍동·행신·원당·덕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 마두·한외·화정·식사·신원도서관, 주엽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 7. 거주지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아람누리: 031) 0000-0000 마두:031) 0000-0000</u> <u>백석:031) 0000-0000 한외: 031) 0000-0000</u> <u>대화:031) 0000-0000 풍동: 031) 0000-0000</u> <u>화정:031) 0000-0000 행신: 031) 0000-0000</u> <u>원당:031) 0000-0000 식사: 031) 0000-0000</u> <u>덕이:031) 0000-0000 신원: 031) 0000-0000</u> <u>주엽어린이:031) 0000-0000</u> <u>화정어린이:031) 0000-0000</u> <u>행신어린이:031) 0000-0000</u> <p style="text-align: center;">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www.goyanglib.or.kr</p> </div>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서식]</p> <p>도서대출증발급(재발급)신청서</p>				<p>[별지 제2호서식]</p> <p>도서대출증발급(재발급)신청서</p>			
본인	성명		보호자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작성)	성명		보호자 (미취학아동 등 본인의 사능력이없는 경우 작성)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신설>		경기도 고양시 구 동 번지 동 호 (마을 아파트 동 호)		주소 (도로명주소)		소재	
소속 (학교, 직장 등)				소속 (학교, 직장 등)			
<신설>				<p>아이디</p> <p>* 영문, 숫자 조합 6~20자 (첫자는 영문만 가능)</p> <p>비밀번호</p> <p>* 영문, 숫자 조합 8~20자</p> <p>※ 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p> <p>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p>			
연락처 <신설>	자택전화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소속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소속전화		
	E-MAIL				E-MAIL		
가족 연락처	성명		관계	제2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연락처		
<p>본인은 도서대출증의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고양시 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도서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자료가 분실 또는 <u>오·훼손되었</u> 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의무를 본인 및 보호자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본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 (서명)</p> <p>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p>				<p>본인은 고양시립도서관의 도서대출증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도서 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자료가 분실 또는 <u>오염· 훼손되었을</u>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보호자가 연대 하여 변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본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 (서명)</p> <p>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p>			
<p>※ 신청자격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양시 재직자 (고양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재학생(고양시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제14조 및 제18조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p> <p>※ 제출서류 : 본인 여부 및 고양시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및 증명사진(6 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p> <p>※ <신설></p>				<p>※ 신청자격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양시 재직자 (고양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재학생(고양시 소재 학교)으로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8조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p> <p>※ 확인서류 : 본인 여부 및 고양시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 증 및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p> <p>※ 증명사진 미지참시 도서관에서 촬영 가능.</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3호서식]</p> <div> <div> <p>기증신청서</p> <p>1. 기증신청자</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인적 사항</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 rowspan="2">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td> <td>핸드폰</td> <td></td> </tr> </table> </div> <div> <p>2. 기증신청목록개요</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종류</th> <th>권(건)수</th> <th>비고</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비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p>3. 신청취지</p> <p>「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p> <p>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p> <p>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p> <p>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p> <p>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p> <p>년 월 일</p> <p>신청 및 동의인 : (서명)</p> <p>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p> </div> </div>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p>[별지 제3호서식]</p> <div> <div> <p>기증신청서</p> <p>1. 기증신청자</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인적 사항</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 rowspan="2">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td> <td>핸드폰</td> <td></td> </tr> </table> </div> <div> <p>2. 기증신청목록개요</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종류</th> <th>권(건)수</th> <th>비고</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비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div> <div> <p>3. 신청취지</p> <p>「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2조 및 <u>같은 조례</u>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p> <p>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p> <p>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p> <p>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p> <p>다. 비 채택된 기증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p> <p>년 월 일</p> <p>신청 및 동의인 : (서명)</p> <p>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p> </div> </div>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위탁신청서</div> <div>1. 위탁신청자</div>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인적사항</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 rowspan="2">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td> <td>핸드폰</td> <td></td> </tr> </table> <div>2. 위탁신청목록개요</div>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종류</th> <th>권(건)수</th> <th>비고</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비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div>3. 신청취지</div> <p>「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p> <p>또한, 아래의 조건에 동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p> <p>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p> <p>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p> <p>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및 동의인 : (서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div>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div style="text-align: center;">위탁신청서</div> <div>1. 위탁신청자</div>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인적사항</td>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 rowspan="2">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r> <tr> <td></td> <td>핸드폰</td> <td></td> </tr> </table> <div>2. 위탁신청목록개요</div>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종류</th> <th>권(건)수</th> <th>비고</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비도서</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div>3. 신청취지</div> <p>「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u>같은 조례</u>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p> <p>또한, 아래의 조건에 동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p> <p>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p> <p>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p> <p>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및 동의인 : (서명)</p> <div style="text-align: center;">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div>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구분	종류	권(건)수	비고																																																														
계																																																																	
도서																																																																	
비도서																																																																	
기타																																																																	

관계법령발췌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기업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는 내용의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 기업고객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정의(안 제2조)
 - 다.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라. 현장의 기본원칙(안 제4조)
 - 마. 현장의 내용 및 구성(안 제5조)

- 바. 헌장의 개정(안 제6조)
- 사. 헌장의 실천(안 제7조)
- 아. 헌장의 공표 및 홍보(안 제8조)
- 자.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안 제9조)
- 차.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0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지역경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075-356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이하"현장"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현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현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행정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헌장에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확인 및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지역경제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지역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지역경제과장 이 정 진
	팀 장 직위 · 성명	기업지원팀장 서 광 진
	담 당 자 직위 · 성명	최 학 환 031-8075-3567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고양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적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부조리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20배 이내로,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종전“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변경 (안 제4조)

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부조리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20배 이내로,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감사담당관 공직윤리팀 (031-8075-213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감사담당관
입안자	과장명	공 석
	팀장명	공직윤리팀장이용안
	담당자 성명·전화	최민형 (8075-2132)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20배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u>3년</u> 이내로 한다.</p> <p>[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제8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대상</th><th>지급기준</th></tr> </thead> <tbody> <tr> <td>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td><td>○ 금품 수수액의 <u>1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10배</u>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td><td>○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td><td>○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1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td><td>○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10배</u> 이내</td></tr> </tbody> </table> <p>※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u>1,000만원</u>으로 하며,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p>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수수액의 <u>1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10배</u>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1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10배</u> 이내	<p>제4조 (신고기한)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p> <p>[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제8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대상</th><th>지급기준</th></tr> </thead> <tbody> <tr> <td>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td><td>○ 금품 수수액의 <u>2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20배</u>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td><td>○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td><td>○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2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td></tr> <tr> <td>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td><td>○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20배</u> 이내</td></tr> </tbody> </table> <p>※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u>2,000만원</u>으로 하며,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p>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수수액의 <u>2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20배</u>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2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20배</u> 이내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수수액의 <u>1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10배</u>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1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10배</u> 이내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수수액의 <u>20배</u>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u>20배</u>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u>10퍼센트</u>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u>20배</u> 이내 ○알선 또는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u>20배</u> 이내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위원회 심의대상 안전(안 제2조)
-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안 제3조)
- 라. 안전 심사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마.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자 출석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바. 위원회 안전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명시(안 제7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정책기획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07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제출) ①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 본청의 팀장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전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전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 하거나 개선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동 길
	팀장 성명	규제개혁추진단장 이 홍 연
	담당자 성명·전화	전 효 창 (8075-2077)

[별지]

규제심사요청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가. 규제사무명						
나.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 장	
다.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및 인적사항						
라. 근거법령 등						
마. 관련규제 수						
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사.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3) 규제의 목표설정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마.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3. 자체심사의견

4. 규제의 존속기한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 ①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중 맨돌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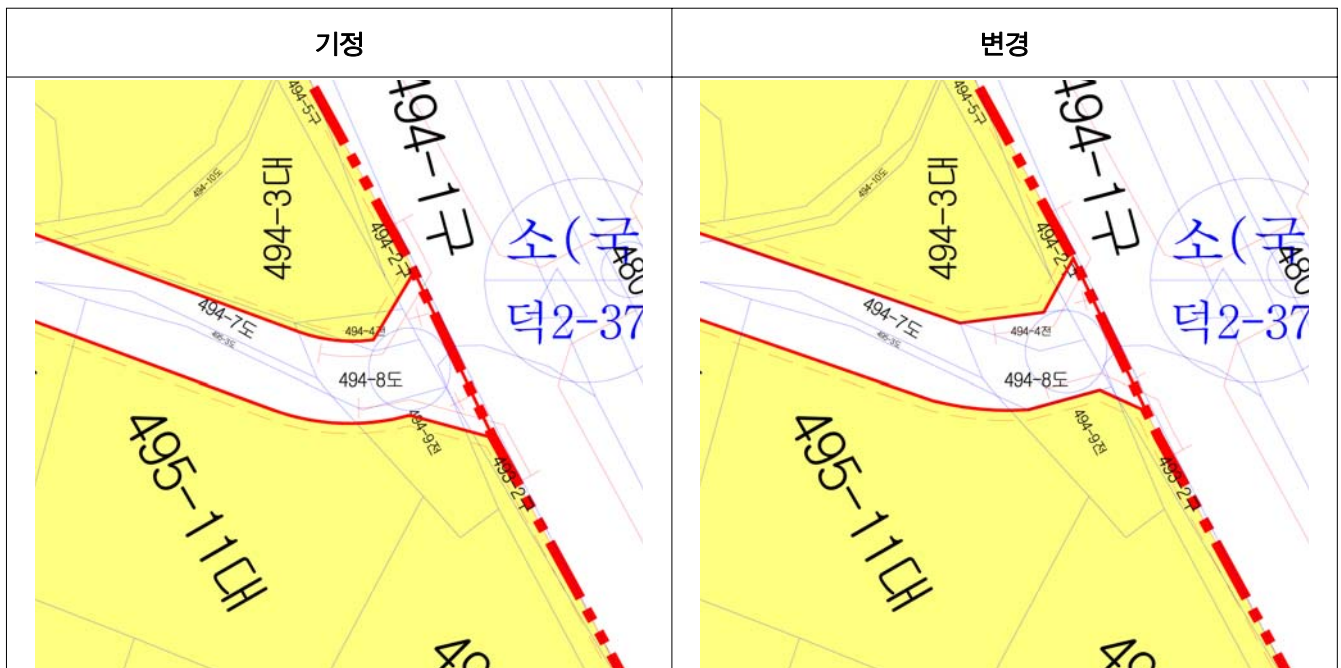
고 양 시 장

1. 변경사유 : 도시계획도로(소로 덕2-369호선)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첨부

- 맨돌취락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4. 기타사항

-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30.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71-7 외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19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1-7 (대장동)	20140930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46-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107-2 (오금동)	20140930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27-4, 32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94-14 (삼송동)	20140930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7-3, 4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94 (동산동)	20140930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43-28 (현천동)	20140930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21 (현천동)	20140930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101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8-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11 (현천동)	20140930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101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5, 137-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3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5, 137-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5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3, 137-19, 137-17, 137-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7-1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9, 137-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7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9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4, 137-19, 137-17, 137-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5-1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9, 137-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5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9, 137-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1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7-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3 (효자동)	20140930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 길 23-11 (동산동)	20140930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5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34 (신원동)	20140930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20140930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 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숭반1길 38-6 (원흥동)	20140930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 영하여 도로명 부여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6-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숭반1길 30-7 (원흥동)	20140930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 영하여 도로명 부여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3 (도내동)	20140930	20131108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06-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6-36 (설문동)	20140930	20090824	고봉산 아래를 지나는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6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 길 122-28 (설문동)	20140930	20090824	하천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먹절길 368-72 (장항동)	20140930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66-28, 566-30, 566-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51 (장항동)	20140930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66-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47 (장항동)	20140930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321-4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 50-110 (성석동)	20140930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7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26-11 (문봉동)	20140930	20090911	고양 팔현 성현의 의미를 도 로명에 적용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 동 64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 로175번길 124-169 (사리현동)	20140930	20100126	공릉천로 시점에서 1750m에 위치한 도로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4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 로11번길 22-30 (식사동)	20140930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 명에 적용	
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7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 로 73 (식사동)	20140930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 명에 적용	위시티스타 타워빌딩
3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 송길 57 (덕이동)	20140930	20100126	천연기념물 송포백송을 도로 명에 적용	
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63-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113번길 64-80 (대화동)	20140930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 월 3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192-12 외1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30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12	2014-09-30	관련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7-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17-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74	2014-09-30	관련지번변경	*2013.03.29. 백석동 1117-29에 사용승인 *2013.04.10. 백석동 1117-29번지를
3						
4						
5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97-47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폐지 건물 고시일자	변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47	2014-09-3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07-29	장항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49	2014-09-3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07-29	장항동	
3						
4						
5						
6						
7						
8						

중로3-180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성사동 산64-11번지 일원에 고양시 도로정책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80호선 원당역 하부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개설 부지 내 철 도시설공단 시설물 저축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 제25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양시장

1. 실시계획 작성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64-1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80호선)도로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규모					면적 (㎡)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결정	당초	중로	3	180	12.0	41.0	1,573	대로2-6	성사동341-17	고양시 고시 제2012-76호 (2012.03.27)	법면포함 (14~16m) 철도중복
	변경	중로	3	180	12.0	41.0	1,238	대로2-6	성사동341-17		
	당초	중로	3	180	12.0	41.0	1,573	대로2-6	성사동341-17		
시행	변경	중로	3	180	12.0	41.0	1,238	대로2-6	성사동341-17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성명 : 고양시장(도로정책과)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 2014. 12 .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덕양구	성사동	341-23	임	138	138	138	공유지	고 양 시				
2	덕양구	성사동	산64-10	임	6,473	639	449	공유지	고 양 시				
3	덕양구	성사동	341-21	임	231	231	231	공유지	고 양 시				
3-1	덕양구	성사동	341-27	임	31	31	31	이교덕 (1/6)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 길 145-58 (대장동 0 119-4)				
								고양시 (1/6)	고 양 시				
								김혜숙 (1/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5 가길 17-39, 401호(체부동, 경복궁빌라)				
								김남용 (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 로 135번길 21, 1305동 1204호				
								이교홍 (1/6)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신당동, 현대아파트 10동 801호)	새고양새 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6	가압류	
										쥬한아름 상호신용 금고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경운동)	가압류	
										청산인 김종원			
										성북세무 서 (징세과)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삼선동 3가 3-2)	압류	
										서울특별 시 (세무과)	서울 중구 세 종대로 110	압류	
										서울특별 시 성북 구(세무1 과)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삼 선동 5가 411)	압류	
										서울특별 시 종로 구(세무1 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수 송동)	압류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이교신 (1/6)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97번 길 29 (이매동, 이매촌 청구아파 트)	도봉세 무서(징 세과)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미 아동 327-5)	압류	
							송파세무 서 (징세과)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풍납2동 388-6)	압류		
							서울특별 시 (세무과)			서울 중구 세 종대로 110	압류		
							용인시 처인구 세무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 량장동)	압류		
							서대문세 무서 (재산세1 과)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11(홍 제동 251)	압류		
							분당세무 서 (재산세 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1 동 6-4 BS타 워 2층~6층	압류		
4	덕양구	성사동	산64-13	임	94	86	55	공유지	고 양 시				
5	덕양구	성사동	337-24	답	294	9	0	공유지	고 양 시				
6	덕양구	성사동	341-17	임	96	96	81	공유지	고 양 시				
7	덕양구	성사동	341-19	철	3,677	232	232	국	국토교통부				
8	덕양구	성사동	692-13	구	232	53	0	국	건 설 부				
9	덕양구	성사동	692-44	구	2,172	55	18	국	건 설 부				
10	덕양구	성사동	692-50	구	33	3	3	국	건 설 부				
총 계					13,384	1,573	1,238						-335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m ³)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 의권리)		
	시군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의 종류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4-8 외 1필지	고물 상	철관	305.4m ³	덕양구 성사동 64-8외 1필지	(주)복된 이영기			

도시계획시설(경기도 고양소방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덕은동 15-36번지일원에 경기도 고양소방서에서 추진예정인 고양시 도시계획시설(화전1공공청사: 경기도 고양소방서)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되었으나 기간연장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5-3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화전1 공공청사: 경기도 고양소방서)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화전1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덕은동 15-36번지일원	1,399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177호 07-12-17	
시행	화전1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덕은동 15-36번지일원	1,399		

- 건축개요

구분	경기도 소방서	비고
대지면적(㎡)	1,399.00	
건축면적(㎡)	446.00	
공작물면적(㎡)	-	
연면적(㎡)	772.88	
건폐율(%)	31.88	
용적율(%)	55.25	
규모	지상2층	

- 건물개요

구분	용도	면적	비고
지상1층	소방서	408.88	
지상2층	소방서	364.00	
합계		772.8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

- 성명 : 경기도 고양소방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4. 9. 30.

- 변경: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변경없음)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	면 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5-34	임	20.0	20.0			경기도				
1		15-35	임	645.0	645.0			경기도				
3	"	15-36	전	254.0	254.0			경기도				
4	"	15-32	도	5,944.0	480			경기도				
	합 계				1,399.0							